

서울고등법원(춘천) 2024. 4. 18 선고 2023나2430 판결 [건물명도 및 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서울고등법원(춘천) 2024. 4. 18 선고 2023나2430 판결

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3. 10. 19 선고 2021가합123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A

피고, 항소인 1. B

2. C

3. D

변론 종결 2024. 3. 22.

판결 선고 2024. 4. 18.

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3. 10. 19. 선고 2021가합123 판결

주문

1.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원고에게,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 표시(1)의 건물(이하 '이 사건 호텔 부분'이라 한다)을 인도하고, 140,658,567원을 지급하며, 피고 D은 별지 기재 부동산 표시(2)의 건물(이하 '이 사건 점포 부분'이라 하며, 이 사건 호텔 부분과 이 사건 점포 부분을 통틀어 별지 기재 부동산 전체를 '이 사건 건물'이라 한다)을 인도하고 20,467,346원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피고들이 이 법원 변론종결 이후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기재된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이에 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.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(피고들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종결 이후인 2024.

4. 8.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① 제1심에서 이루어진 차임 감정에 오류가 있고, ② 이 사건 건물에 지출한 유익비가 있으며, ③ 원고의 인도명령집행 과정에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 C을 배제한 위법이 있으며, ④ 원고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다는 주장을 하였다. 위 주장 중 ①, ③ 주장은 제1심에서도 하였던 주장이고, ② 주장에 관하여는, 2024.

4. 8. 준비서면에 첨부한 자료들만으로 이 사건 건물에 유익비가 지출되었고 그를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, ④ 주장은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법률상 의미 있는 정당한 주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. 따라서 피고들의 위 준비서면만으로

제1심의 결론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).

○ 제1심판결 제13면 아래에서 5행부터 제14면 6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.

『1) 앞서 제1의 다.항 2)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D은 늦어도 2020. 3. 3.부터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였고, 피고 D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(2023. 7. 2.자 준비서면 제3의 가.항 참조). 그렇다면 피고 D은 원고의 이 사건 경매절차를 통한 이 사건 점포 부분의 소유권 취득일인 2021. 3. 9.부터 2023. 8. 16.까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점포 부분을 사용·수익함으로써 그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다.』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부동산인도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며,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(위 각하 부분 제외)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할 것인바,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,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원종찬

판사박동욱

판사홍순건

별지